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0. 9.

**국 토 교 통 부
(감사담당관실)**

감사결과 징계요구서

일련번호	1	
관련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처분연월	지적내용	처분요구사항
2020.8.	충실의 의무 위반 등	해임 건의

□ 제 목 : 충실의 의무 위반 등

□ 징계대상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 징계종류 : 해임 건의

□ 징계사유

위 사람은 2019. 4. 16.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제1항에 따르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¹⁾,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고

1)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5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규정 등²⁾에 근거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관의 장 등이 하급자 등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 배제·부당한 인사를 하는 행위 등을 '갑질'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윤리규정」 임직원의 기본윤리 2에 따르면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를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위 사람은 아래에 적시하는 바와 같이 2019. 10. 2.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행된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도중 제18호 태풍 '미탁' 으로

2)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친절·공정 의무, 청렴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인한 기간시설 피해 대비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로부터 국정감사장 조기퇴장과 현장에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당부 받았는데도, 인천국제공항 등 현장으로 가거나 상황관리부서³⁾ 등과 상황관리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임의로 자택에 귀가하였으며, 이후 국회의 국정감사 당일 행적 관련 경위서 제출 요구에 사실과 다르게 행적을 보고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공사 ㅌㅌㅌㅌ센터2팀장 보직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 ㄱㄱㄱ가 보낸 인사 고충 관련 항의 메일(2020.2.27)을 받고 “나와 공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처장 ㄱㄱㄱ 및 ○○팀장 ㄱㄱㄱ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를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처에서 ‘공사 「인사규정」 제38조(복종의 의무)⁴⁾에 따른 진술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자체 법무팀의 자문을 전달하면서 직위해제 처분 시 무리한 인사규정 적용이라고 건의하였는데도 직위해제 등을 재차 지시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전략회의⁵⁾(3.2)에서 같은 취지로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여 직위해제 결정(3.4)에 이르게 하는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1. 직무수행 소홀

1) 징계 혐의사실

2019. 10. 2.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행된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정감사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들도 참석하였고, 위 사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3) ㅌㅌㅌㅌ센터, 풍수해 관심단계일 경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기상정보 모니터링, 상황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

4) 공사 「인사규정」 제38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할 수 있다.

5) 20. 3. 4.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인 ○○본부장 ㄴㄴㄴ(위원장), ○○본부장 ㄱㄱㄱ, ㄱㄱ본부장 ㅅㅅㅅ, ㅎㅎㅎ ㅎ실장 ○○○, ㅅㅅㅅㅅ실장 ○○○ 등 참석

위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는 국정감사 도중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기간시설 피해 대비를 위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도로·철도·공항 관련 기관장들에게 조기퇴장(15:30)을 허용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위 사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표하고 인천공항시설 및 항공안전 등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국정감사장 퇴장 이후 인천국제공항 현장 등으로 이동하여 상황관리부서 등과 상황파악 및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사람은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며 태풍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인천공항 등 현장으로 가거나 상황관리부서⁶⁾ 등과 상황 파악 대응 노력을 기울인 채 임의로 의왕시 소재 자택으로 퇴근(18:00)한 후 안양시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20:25 결제)를 하는 등 태풍 대비태세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국정감사 당일 국정감사장 퇴장 이후 사장의 소재가 장시간 파악되지 않아 국회에서 당일 행적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유서에 자택 귀가 및 지인과의 저녁식사 사실을 누락하고,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갑문 등 외곽 점검, 관사 대기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였다.

2) 징계대상자의 주장

6) 태풍 관심단계시 상황 대응 총괄부서, 당시 ㄷㄷㄷㄷ센터에서는 태풍 관심단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기상정보를 지속 모니터링, 내부 및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등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국감장 이석 후 행적(사유서)]

- ▶ (동선) 국감장 이석(15:30) → (비상대책본부 설치 등 검토(16:30~17:00) → 태풍상황 파악·분석(18:00)) → 인천공항 도착(19:00) → 공항 배수지 갑문 등 외곽점검(19:00~20:00) → 영종도 관사(20:00~21:10)→ 국토부 관계자 통화(21:10~22:30)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태풍 대비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도중 이미 태풍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지역을 벗어난 것을 확인하여 ㅂㅂ실장 등에게 전 직원이 자택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지시한 후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이후 지인과 안양시 소재 'ㅇㅇ숯불구이' 식당에서 식사⁷⁾를 하였으나 이를 누락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며, 식사 도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연락⁸⁾을 받은 후 식사자리에서 나와(18:40)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 외곽 갑문을 점검한 후 관사에서 대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① (행적누락) 위 사람은 자택 퇴근(18:00) 및 지인과의 저녁식사(18:30)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정감사 당일 장시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국회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석 후 행적은 사실대로 적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택에 귀가한 후 지인과 저녁식사를 한 부분은 당일 행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임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며, 지인과의 식사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지인과의 통화내역, 결제 영수증⁹⁾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허위보고) 그리고 위 사람은 자택귀가 전(16:30-18:00) 태풍대비 비상대책본부 설치, 근무자 투입방법을 검토하였으나 태풍 영향이 미비하여 응소가능 지

7) 식사비는 20:25 228,000원이 결제되었으나, 사장은 18:40경 지인에게 카드를 주고 자신은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

8) 국감장에서 사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

9) 10.4. ㅂㅂ(ㅅㅅㅅ)에게 지시하여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재결제

역에서 대기하기로 확정하고 직원들에게 자택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지시한 후 자택 귀가하였고, 귀가 후 지인과의 식사 도중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갑문 등 외곽점검(19:00-20:00)에 임한 후 관사에서 대기(20:00-21:10)하였다고 주장하나, ㄱㄱ본부장 ○○○ 및 ㄴㄴ실장 ㄱㄱㄱ이 국정감사장 퇴장 후 사장과 통화 시 태풍에 영향이 없다는 보고만 하였을 뿐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태풍 관심 단계시 상황 총괄부서인 공사 ㄷㄷㄷㄷ 센터와 점검 및 관련사항 등에 대해 통화한 적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위 사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평소 사장이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인천공항으로 이동시 공사 차량이나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사장 운전원 등이 진술한 점, 안양에서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의 경로에는 갑문이 위치해 있지 않은 점, 관계기관 조사 시 택시에서 지나쳐 가면서 갑문을 점검했다고 하나 우리부 조사에서는 택시에서 내려 갑문을 점검했다고 주장하는 등 점검 방법에 대한 위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없는 점을 볼 때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외곽 갑문을 점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정감사 당일 사장 관사는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고 관사 청소원¹⁰⁾들이 진술하는 점, 위 사람은 관계기관 조사 시 관사 대기 시간이 20:00-22:30이라고 주장하나 우리부 조사에서는 20:00-21:00라고 주장하는 등 관사 대기 시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장이 관사에 대기 중이었다면 ㄴㄴ실장이 이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하나 국토교통부 감사실에서 사장 소재파악(21:18)을 위해 공사 ㄱㄱ팀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ㄱㄱ팀장이 ㄴㄴ실장에게 전화하였으나 ㄴㄴ실장도 사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¹¹⁾한 점, 평소 사장이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이 진술한 점, 관사 이용과 관련하여

10) 청소원들은 관사 사용시 흔적 등이 남아 무조건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진술

11) ㄴㄴ실장은 ○○ 조사에서 ㄱㄱ팀장 ○○○의 전화를 받고 사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사장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우리부 조사에서는 20:30경 사장으로부터 관사 대기 사실을 전화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

어떠한 증빙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사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정위치 근무를 확인하고 연락을 받아 영종도로 이동하였다고 하면서, 공사 상황실이나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고 관사로 바로 갔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한 등 위와 같은 위 사람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위 사람은 국정감사장 퇴장(2019.10.2. 15:30) 후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18:00)한 후 안양시 인덕원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고 자택귀가 및 지인과의 저녁식사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시간(19:00~21:10)에 인천국제공항 도착, 공항 배수지 갑문 등 외곽점검과 관사에 대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10.3) 및 국토교통위원회(10.4)에 보고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였다.

2. 소속 직원 인사 불공정

1) 징계 혐의사실

위 사람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운영2팀장 보직인사¹²⁾에서 탈락(20.2.25)한 ㄱㄱㄱ 차장이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 메일을 발송(2.27)¹³⁾하자 “나와 공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처장 ㄱㄱㄱ와 ㉹㉹팀장 ㄱㄱㄱ에게 ㄱㄱㄱ에 대한 업무배제 및 징계 검토를 지시(2.28)하였다.

위 사람의 동 지시에 대하여 ㉹㉹㉹㉹처에서는 공사 「인사규정」 제63조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체 법무팀의 자문결과 ㄱㄱㄱ의 행위가 진술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리한 인사규정 적용이라고 건의하였음에도 위 사람은 ㉹㉹㉹㉹처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직위해제 등을 재차 지시(3.2)하였다.

12) 능력과 균형인사를 고려하여 ㉹㉹팀에서 추천한 후보군을 CEO가 면담하여 확정하는 ‘발탁제’ 방식 시행

13) (수신자) ㉹㉹㉹㉹처장 ㄱㄱㄱ, (참조) 사장 ㄱㄱㄱ, 부사장 ㉹㉹ 상임감사위원 ㄱㄱㄱ

그리고, 위 사람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참석한 전략회의(3.2)에서, 조직 기강 문란과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ㄱㄱㄱ를 업무배제(직위해제) 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그 결과 2020. 3. 4. 실시된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ㄱㄱㄱ에 대한 직위해제가 결정되는 등 위 사람은 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훼손하였다.

2) 징계대상자의 주장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ㄱㄱㄱ가 보낸 메일이 인사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고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며, ㄱㄱㄱ의 메일과 관련하여 기강확립 의견이 대두되어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인사부서에서 최종 징계 전까지 직무배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직위해제 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처장과 ○○팀장은 ㄱㄱㄱ가 보낸 편지내용에 대해 사장이 “이런 행동은 나와 공사에 대한 모욕이라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ㄱㄱㄱ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도 검토하라”고 지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위해제 처분시 무리한 인사규정 적용이라는 법무팀의 자문을 전달하였음에도 ○○○○처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공사내부 상황을 감안하여 직위해제하라고 지시하여, 직위해제 규정으로 공사 「인사규정」 제63조(직위해제의 사유) 제1항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를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본부장 ㅂㅂㅂ은 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등¹⁴⁾

14) ○○본부장, ㄱㄱ본부장, ㅎㅎㅎㅎ실장, ㅅㅅㅅㅅ실장

이 참석한 전략회의 석상에서 “기강이 문란해졌다. ㄱㄱㄱ를 업무배제 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했고, “인사권자인 사장이 그렇게 진노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부하직원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사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사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의견이 있을 때는 이를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진술권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제5항에 따르면 사장은 직원이 보직관련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 「노사협의회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충이 있을 때는 고충처리위원¹⁵⁾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절차나 방법에 구애 없이 자신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직위해제 대상자인 공사 직원 ㄱㄱㄱ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자택대기 발령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 대표로 출석한 공사 ○○○○처장은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에게 ㄱㄱㄱ가 이메일을 보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절차나 방법상 하자가 없다고 진술¹⁶⁾하고 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고 않고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를 하거나 근무태도 등 객관적 자료를 반영하지도 않는 등 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2020.6.2)하였다.

위와 같이 위 사람은 보직 인사와 관련하여 ㄱㄱㄱ가 메일을 이용하여 고충

15) 노사협의회 위원중 선임(3인 이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동수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5인 이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사의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위원(5인 이내))

16) 다만, 내용이 도를 넘어 회사 측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주장

상담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 처 및 인사위원회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하급자인 ㄱㄱㄱ을 직위해제 하였고, 이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갑질'에 해당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1항 및 공사 「윤리규정」 제4조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훼손하였다.

□ 조치할 사항

○ 항공정책실장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공공기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국감장 이석 후 태풍 대비 소홀, 국회 허위 보고 및 하급자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배제 등 갑질 행위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명예**는 물론,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위 사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보)

*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안임